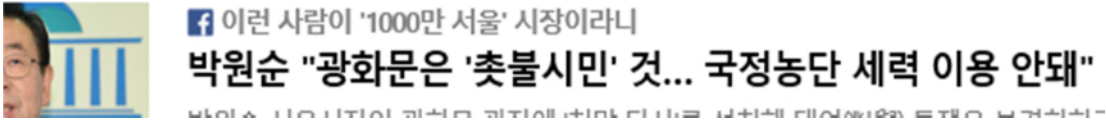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523-002	게재일	2019-05-01 18:17
제 목	박원순 "광화문은 '촛불시민' 것... 국정농단 세력 이용 안돼"		
U R 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1/2019050100037.html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주의'로 결정한다.		
이 유	<p>1. 뉴데일리의 해당 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려던 자유한국당의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박 시장의 불허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 다른 투쟁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사진 위에 "이런 사람이 '1000만 서울' 시장이라니"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칼럼이 아닌 사실 보도 기사에서 본문에 없는 내용을 의견 형식으로 표현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2. 위 기사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하도록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2항(사실과 의견 구분)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2항 (사실과 의견 구분)		
<p>2019년 5월 23일</p> <p>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p> <p>위원장 이민규</p> <p>위 원 김완성, 남영진, 심재웅, 이강혁, 황용석</p>			